

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4년 3월 13일



군 산 시 장

군산시 조례 제2163호

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·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

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·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**군산시**”를 “**군산시의회**”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**군산시**”를 “**군산시의회**”로 한다.

제6조 후단 중 “**900,000원**과”를 “**1,200,000원**”으로, “**200,000원**”을 “**300,000원**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) 개정 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2024년 1월분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의정활동비 지급) ① (생략)</p> <p>② 의정활동비는 <u>군산시</u>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2조(의정활동비 지급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군산시의회</u> 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조(월정수당 지급) ① (생략)</p> <p>② 월정수당을 <u>군산시</u>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3조(월정수당 지급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군산시의회</u> 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조(의정활동비 지급기준)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·연구비로 매월 <u>900,000원</u>과, 보조활동비로 매월 <u>200,000원</u>으로 한다.</p>	<p>제6조(의정활동비 지급기준) ----- ----- ----- <u>1,200,000원</u> ----- ----- <u>300,000원</u> -----.</p>